

퇴직급여 총당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 / Tahun 2008) 제 9조 3항에 총당금 설정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외규정으로 금융기관의 대손총당금, 보험회사총당금, 예금보험기관의 총당금, 광업회사의 복구총당금, 조림회사의 재투자 적립금, 산업폐기물 처리회사의 처리장 폐쇄 및 복구관련 총당금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 총당금은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회계처리시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총당금을 설정하였다면 총당금으로 설정한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은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 (PSAK) 24조에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하여 연금계리사를 통하여 퇴직급여에 대하여 총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회계기준(ETAP)는 퇴직총당금 적용의무가 없다. 또한 회계 처리시 PSAK 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총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니 세법에는 실제로 지급이 되었을 때 비용인정이 되므로 총당금으로 설정한 퇴직급여는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끝>